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9. 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9. 2.)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에 고품질 정보문화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도서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사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2조, 제23조

2) 추진 필요성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및 능률성 확보 필요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
- 2)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 3)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영어 프로그램 포함)의 기획·운영
- 4) 도서관 물품 및 시설 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5)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위탁시설의 개요

(단위 : m<sup>2</sup>, 명)

도서관명	소재지	면적	인력	위탁운영법인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도화4길 53	216.48	2	(학)서강대학교

○ 위탁기간 : 2024.11.1. ~ 2027.10.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예산기준)

1) 소요예산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비 교부금액 : 139,208천원

## 2)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도서관명	계	구 분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139,208	91,329	37,879	10,000

### ○ 추진일정

- 1) 2024. 8. : 민간 위탁 관련 방침 수립, 수탁기관 공고 및 접수
- 2) 2024. 9. ~ 10.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
- 3) 2024. 10. : 위수탁 협약 체결

###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2조, 제2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4.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고품질 정보문화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도서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위 치	운영시간	규 모			위탁업체 (위탁기관)	최초 위탁일
			연면적 (㎡)	열람석 (석)	장서수 (권)		
마포어린이 영어도서관	도화4길53, 2층	월~금 10:00~19:00 토 10:00~18:00	216.48	20	22,946	학)서강대학교 (2021.11.1.~ 2024.10.31)	2008.11.
꿈·래어린이 영어도서관	월드컵로13길 80, 2층	(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관)	221.33	20	23,271	주)다앤뉴 (2021.11.1.~ 2024.10.31)	2010.12.

## ○ 동의안 추진 필요성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9조1)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sup>2)</sup>
- 본 위탁사무가 도서관 시설의 관리·운영,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홍보,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각종 편의 사항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된다 할 것이며,
- 관련 조례상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영어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용이

1)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점, 구 직영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문기관에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및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책임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운영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운영비 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별표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2. 30.](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49호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2.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 능력

**제23조(위탁협약)**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위탁협약 만료 전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03. 09.](일부개정) 2023. 03. 09. 조례 제1512호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